

제18장 제도규정

제18.1조 공동위원회의 설치

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장관급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회합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. 각 당사국은 그의 대표단의 구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제18.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

1. 공동위원회는
 - 가.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평가한다.
 - 나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, 작업반, 그리고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. 그리고
 - 다.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.
2. 공동위원회는
 - 가. 임시 또는 상설위원회, 작업반,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 - 나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임시 또는 상설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에 사안을 회부하거나 이들이 제기한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.
 - 다.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.
 - 라. 적절한 경우,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.
 - 마. 이 협정에 따른 이행 약정을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다.
 - 바. 그 자신의 적절한 절차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.
 - 사.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.

- 아.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.
- 자. 비정부 인 또는 집단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. 그리고
- 차.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8.3조 공동위원회의 회의

1.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, 그 후 매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.
2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각 당사국의 영토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각 당사국이 순차적으로 의장을 맡는다. 공동위원회 회의의 의장을 맡은 당사국은 회의의 모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.
3.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임시 또는 상설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정한다.

제18.4조 접촉선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.
2. 양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에 대한 모든 개정사항을 서로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.
3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한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,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.